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추연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73
----------	-------

발의년월일 : 2020. 10. 16.
발의자 : 추연호 의원 외 6명

1. 제정이유

- 안산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안 제3조)
-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기관 (안 제5조)
- 노동이사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 노동이사 임기 및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8 ~ 제9조)
- 제척·회피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3(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6.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별첨(관련부서 검토의견서)

불임1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 나. 안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대상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1.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사·공단
 2. 근로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제2조제2호 나목의 출자·출연기관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

는 안전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추연호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0)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8-473호
----------	---------

제안년월일 : 2020. 10. 29.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기관을 정비하고 노동이사제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노동이사제 적용대상기관 정비(안 제5조제1항제2호)
- 노동이사제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규정 명확화(안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 ‘자기’를 ‘본인’으로 용어수정 (안 제10조제1항)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출연기관 중 근로자 정원이 50명 이상이며, 안산
시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관

안 제6조제1항 중 “공사”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자기 또는 자기”를 “본인 또는 본인”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법령 등”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규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5조(대상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p> <p>1. 생 략 2. <u>근로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제2조제2호 나목의 출자 · 출연기관</u></p> <p>② (생 략)</p>	<p>제5조(대상기관) ① -----. -----. 1. (원안과 같음) 2. <u>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 · 출연기관 중 근로자 정원이 50명 이상이며, 안산시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관</u> ② (원안과 같음)</p>
<p>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u>공사</u>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6조(임명) ① ----- <u>공공기관</u>----- -----. ② ~ ③ (원안과 같음)</p>
<p>제10조(제척 · 회피) ① 노동이사는 <u>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 의결</u>에서 제척된다.</p> <p>② (생 략)</p>	<p>제10조(제척 · 회피) ① -----<u>본인 또는 본인</u>----- -----. ② (생 략)</p>
<p>제11조(수당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u>법령 등</u>이 정한 바에 따른다.</p>	<p>제11조(수당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 ---<u>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규정</u>----- -----.</p>